

□ 다음은 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제안이유는

○ '05년 7월 22일 환경부령 제79호에 의거 「환경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」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○ 조례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“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”로 하고

○ 제3조제1항중 “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”을 “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」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

□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, 「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및 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